#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추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. 5. 29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제안이유

○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○ 병역명문가 지원 사항 및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 ~ 안 제4조)

○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대상자와

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,

○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우리시는 2019년 5월 현재 2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고,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#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제안이유

○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「착한가격업소」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지정(안 제3조)

-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며,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함.

○ 이용 활성화(안 제5조)

-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.

○ 지원(안 제7조)

-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, 종량제 봉투 지원 및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음.

○ 사후관리(안 제8조)

-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「착한가격업소」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, 영업자의 협조사항, 이용활성화, 지원,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지원,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참고로 금년 5월말 현재 전국 8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5,69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되었고, 우리시는 64개 업소가 지정되었음.

#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개정이유

○ 시의 행·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,

○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

○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○ 또한,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여 주요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긴급한 법률자문의 처리와 시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 “7명 이내”에서 “10명 이내”로 확대함. (안 제2조제1항)

○ 긴급하고 중요한 자문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자문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었

으나 자문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함. (안 제4조제6항)

○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폭력, 폭언 등이 있는 경우 고소·고발·민사소송·피해구제신청 등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5조제1항 제4호, 제5호)

○ 중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이를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3항)

○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범위를 규정함. (안 별표 2)

## 3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한 법률자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사후 비용지원을 규정하여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고,

○ 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를 신설하여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시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○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중요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

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하였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중요사안에 대한 신속한 자문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참고로 인근시의 고문변호사 수는 대부분 10명 이내 또는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.

| 구 분 | 수원 | 고양 | 용인 | 성남 | 화성 | 안양 | 시흥 | 광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변호사 수 | 15명 | 10명 | 15명 | 15명 | 15명 | 10명 | 10명 | 15명 |

#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개정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(법률 제15270호, 2017. 12. 19. 공포, 2019. 7. 1.시행)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'장애 등급' 이 '장애 정도' 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6041호, 2018. 12. 24. 공포, 2019. 1. 1.시행)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장애등급제 개편(장애등급→장애정도)으로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 개정(안 제2조)

○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'22. 6. 30.까지로 개정(안 제2조)

○ 종교단체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관련조항을 개정(안 제3조)

○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(안 제2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는 법률 제15270호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개편사항에 따라 등급구분이 폐

지되어 종전의 “시각장애 4급”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개정하고,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

○ 그간 시각장애(4급)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고,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고, 각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장애등급 변경사항

| 기존 1 ~ 3급 | 기존 4 ~ 6급 |
|---|---|
|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

#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제안이유

○ ‘자치분권 종합계획(2018. 9.)’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, 조직운영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(안 제2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(안 제3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임기를 규정(안 제4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중앙-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,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(2018. 9. 11.)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추진으로, 지방자

치 단체 자치 조직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“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

○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 제39조에 의거 시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및 기본인력계획 수립, 조직진단,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개정이유

○ 「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(행안부)」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

## 2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. (안 제2조)

- 총 수 : 2,061명 → 2,131명 (70명 증)

· 집행기관 : 2,031명 → 2,101명 (70명 증)

· 의회사무기구 : 30명 → 30명 (-)

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.(안 별표3)

- 종류별 정원

| 구 분 | | 계 | 정무직 | 일반직 | 별정직 | 연구직 | 지도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원 | 현 행 | 2,061 | 1 | 2,040 | 3 | 6 | 11 |
| | 개정안 | 2,131 | 1 | 2,110 | 3 | 6 | 11 |
| 증 감 | | +70 | - | +70 | - | - | - |

- 직급별 정원

| 구 분 | | 계 | 정무직 | 일반직 | | | | | 별정직 | | 연구직 | 지도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이하 | 전문 경력관 | 5급 상당 | 6급상당 이 하 | | |
| 정원 | 현 행 | 2,061 | 1 | 1 | 1 | 15 | 110 | 1,912 | 1 | 1 | 2 | 6 | 11 |
| | 개정안 | 2,131 | 1 | 1 | 1 | 15 | 110 | 1,982 | 1 | 1 | 2 | 6 | 11 |
| 증 감 | | +70 | - | - | - | - | - | +70 | - | - | - | - | - |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

○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정원관리 기관별, 직종별·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,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,061명에서 2,131명으로 7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,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관련 순증인원 41명,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9명이며,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70명,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70명을 집행부에 증원하는 것임.

○ 또한 2019년도 안산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8년도 총액 188,735,649천원 보다 15,444,997천원 증가한 204,180,646천원으로 소요인건비 추계가 2019년도 총액인건비 인상폭 범위 내에 있어 정원을 조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제안이유

○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

○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

○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

## 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지원 방법 및 대상(안 제3조~제4조)

○ 지원 금액 및 절차(안 제5조~제8조)

○ 지원 시기, 위탁, 환수 및 지급중지(안 제9조~제11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교육여건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“교육하기 좋은 도시”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안 제1조 및 제2조에 반값등록금에 관한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하고

○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원방법, 지원대상, 지원금액의 공제 및 범위 등을 규정 하였으며

○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신청인, 신청방법, 지원절차, 지원시기를 규정하였고

○ 안 제10조, 제11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위탁과 부당지급의 환수 및 중지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“교육하기 좋은 도시”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가 되지 않았으며, 조례제정 공청회시 제시한 지급대상 거주기간,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동시 수립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#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 규약 동의안
# 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. 5. 28. 제출되어 5. 31.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「**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1. 제안이유

○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,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,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명 칭(안 제2조)

- 본 회는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라 칭함

○ 협의회 사업(안 제5조)

-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
-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·연수 사업
- 독서 진흥 관련 기관·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
-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
-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
-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

○ 협의회 회원(안 제6조)

-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“별표” 지방자치단체로 구성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

※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 가입

○ 임　원(안 제7조)

- 회장 1명, 부회장 2~3명, 감사 2명
-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

○ 총회 및 의결(안 제10조)

-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-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재적회원 1/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, 정관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○ 정족수(안 제12조)

- 의결 :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○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(안 제14조)

-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,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

○ 재　원(안 제17조)

-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,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- 부담금(회비) 2백만원, 2019 2회추경 반영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음에 따라,

○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함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

○ “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”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가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참고로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는 2018년 11월 28일 발족하여,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.